

멕시코 식품관련 정보

I. 멕시코 식품 수출을 위해 만족시켜야 할 요건

1. 허가 사항

Sagarpa(농축수산부)에서는 사전수입승인제(Permiso)와 사전수입신고제(Aviso), 2가지로 운영함.

a. 사전수입승인제 (Permiso)

- 멕시코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미리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
- 수입업자는 SSA(보건부)에 판매증명서(Certificado de Venta Libre)와 성분분석표(Certificado de Analisis), 인보이스 (Commercial Invoice), 라벨부착샘플(라벨에는 제품번호 Lote, 유효기간 표기)와 은행에 낸 인지대(150불) 납부영수증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

b. 사전수입신고제 (Aviso)

- 사전에 SSA(보건부)에 한국식약청에서 발급한 판매증명서 Certificado de Venta Libre 및 성분분석표Certificado de Analisis를 제출해 서류검사 후 문제가 없으면 바로 서류통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
 - 확인서 발급 후 해당물품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서류심사만으로 바로 통관되며, 통관 후 수입업자 창고에 물건 도착 20일 이내에 보건부 직원이 직접 창고에 나와 수입신고제품목의 라벨과 위생상태 등을 확인
 - 제품 검사 후 사전신고된 제품과 다르거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며, 최악의 경우 수입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한번 취소된 수입면허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함.
- ※ 멕시코의 라벨링규정에 맞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멕시코식의 관료적 업무자세로 인해 검역기간이 매우 길어지기도 하므로 이를 고려해 소요시간, 수입품목의 유통기간에 유의해야 함.

2. 검역, 검사 절차 및 제도

- 검역은 Sagarpa (농축수산부) 직원이 항구, 국경지대에서 실시하며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해 실시함
- 선박운송은 하역전 검역을 하며 육로운송은 수입물품 및 운송차량에 대한 서류 검사도 함께 함
- 샘플검사 결과 평균이 검출되면 수입물품은 멕시코로의 반입이 불가능하고 즉시 반출 또는 파괴하며 발생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.

- 수입식품이 사전수입승인제(Permiso) 대상일 경우 세관도착한 후 샘플검사기간이 최장 20일이므로 식품상태 보전을 위해 특수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하게 됨.
- 라벨 또는 포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15일을 추가로 부여함.
- 농림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검역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모든 멕시코 영토의 첫 관문에 파견된 농축수산부 산하 위생 검역관의 책임하에 있으며, 이들이 발행한 증명서로만 통관이 가능함.

참고: 멕시코 농축수산부 SAGARPA, 보건부 SSA , 경제부 SE